

[별지 제45호서식]<개정 1987.12.11>

수 거 증 (제56조 관련)

수 거 증					
① 피수거자의	성 명				
	상 호				
② 수 거 장 소					
③ 수 거 할 상 품 명		④종 류		⑤수 량	
계량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상품의 품질 및 실량검사를 위하여 수거함. 19 . . . 공업진흥청 시 . 도 계량검사공무원 성명 (인)					

4203-32A

1981.3.30 승인

190mm×268mm

(신문용지 54g/m²)